

보험금액의 전용

1. 사고의 개요

1987년 1월 17일 보험계약자 J와 보험자 K사이에서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에 소재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1동과 동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금액은 건물 7천만원, 1층 다방시설 및 집기비품 1천3백만원, 2층 당구장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7백만원, 3층 주택가재일체 1천만원 등 총 보험금액 1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듬해인 1988년 5월초에는 다방과 당구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위 건물의 1, 2층을 개조하여 일반 유흥음식점(일종의 카바레)으로 용도변경해 1988년 6월 2일 위 당사자 사이에 유흥음식점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88년 10월 30일 위 일반 유흥음식점의 온풍기의 연통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일부 소실되고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이 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K사는 H손해사정회사에 손해액조사를 의뢰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 2국 조정역)

하였으며, H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6천6백9십만1백7원, 손해액 2백22만5천6백15원, 소잔물 4만9천4백원, 정미손해액 2백17만6천2백15원,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3천9백6만4천5백46원, 손해액 1천2백만3천5백72원, 소잔물 2만7천5백20원, 정미손해액 1천1백97만6천52원을 산정하였다.

K사는 위 손해액사정결과를 토대로 건물의 경우엔 초과보험(보험금액 7천만원, 보험가액 6천6백90만1백7원)이므로 정미손해액 2백17만6천2백15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산정하였고,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일부보험(보험금액 2천만원, 보험가액 3천9백6만4천5백46원)에 해당되

므로 보험금액대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보상을 실시하여 7백66만4천2백72원을 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보험계약자 J가 동 비례보상 및 손해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보험계약자 J는 다방 및 당구장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2천만원으로 한 화재보험에 가입한바 있고, 그후 다방 및 당구장을 수리하여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추가로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2천만원 증액하였으므로 보험금액은 4천만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초과보험에 해당되는 데도 K사에서 보험금액을 2천만원으로 축소하여 비례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아울러 본 건 화재사고로 손해액이 2천4백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도 K사에서 9백84만4백87원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보험자 K는 보험계약자 J가 당초 다방 및 당구장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를 보험가입하였다가, 그후 동 다방 및 당구장을 폐쇄하

고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이를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 변경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동 유흥음식점에 대하여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본 건 기존 다방 및 당구장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는 보험의 목적이 소멸된 것으로서(기존 다방, 당구장에 대한 보험계약해지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책임이 있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건물보험가입금액 7천만원과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H손해사정회사의 손해사정보고서에 의거, 동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해 비례보상을 실시하여 보험금 9백84만4백87원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조정)내용

본 건을 심의한 분쟁심의회위원회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본건 처리를 위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동 조정결정에 따라 당사자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조정됨으로써 본건 분쟁은 해결되었다.

「K사의 장기화재보험에 가입된 보험계약자 J의 보험목적물이 1988년 10월 30일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K사는 1천5백만원을 보험계약자 J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계약자 J는 동 합의조정에 따라 이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후설

본 건에 있어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보험계약의 개별적용 및 손해액 구분산정여부라 할 수 있겠다. 즉 본 건 사고 당시 유흥음식점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과 더불어 다방·당구장의 내부시설이나 집기비품이 잔존하고 있었다면 유흥음식점에 대한 보험계약과 다방·당구장에 대한 보험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유흥음식점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손해액과 다방·당구장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손해액도 별도로 사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방·당구장의 내부시설과 집기비품은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부 유흥음식점에 필요한 내부시설과 집기비품으로 재시설 또는 교체되었으며, 다만 다방·당구장에서 사용하던 환풍기 하나만 유흥음식점에 승계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다방·당구장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다방·당구장부분과 유흥음식점 부분으로 구분해서 손해사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다른 주요쟁점은 유흥음식점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액 추가증액(보험금액 전용) 인정여부(유흥음식점에 대한 보험금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달라짐)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다방·당구장에 대한 보험해지가 없었기 때문에 동 보험계약은 살아있고, 또한 기존의 보험금액 2천만원에 추가해서 2천만원을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일반유흥음식점의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액은 4천만원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에 반해 영업소장과 대리점 대표는 보험계약자가 다방·당구장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설 및 집기비품이 2천여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보험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당사자사이에 본인의 보험계약체결 경위 및 보험금액 증액여부에 대해 차이나고 있다. 어쨌든 다방·당구장에 대한 보험계약이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채로 살아 있었으므로 동 기존보험금액 2천만원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동 유흥음식점에 대한 보험금액을 4천만원으로 보게 되면 초과보험이 되므로 손해액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동 보험금액을 2천만원으로 보게 되면 일부보험이 되므로 관계사의 보험금산출내역과 같이 비례보상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자 K는 시설현황과 피해현황을 토대로 소요물량을 산출하고 건축표준품셈표, 시중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복구공사비 및 재조달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자 K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산정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고발생지점이 울진군 온정면으로서 운반비나 지역성 등을 감안할 때 시설재료비나 집기비품비용이 서울지역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에 의해 본건이 처리되도록 일단 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